

변경

산업시설용지		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㎡)
1	-1	2,140
	-2	3,371
	-3	5,290
	-4	7,752
	소계	18,553
2	-1	7,887
	-2	9,110
	-3	3,304
	-4	6,141
	소계	26,442
3	-1	2,110
	-2	1,662
	-3	3,331
	-4	5,898
	소계	13,001
4	-1	6,919
	-2	3,456
	-3	3,454
	-4	3,459
	소계	34,257
5	-1	3,314
	-2	3,350
	-3	3,034
	-4	3,257
	소계	38,753
6	-1	3,332
	-2	3,332
	-3	3,149
	-4	3,148
	소계	43,040
7	-1	1,770
	-2	1,769
	-3	1,665
	-4	1,653
	소계	19,162
8	-1	2,230
	-2	2,015
	-3	1,835
	-4	1,831
	소계	10,36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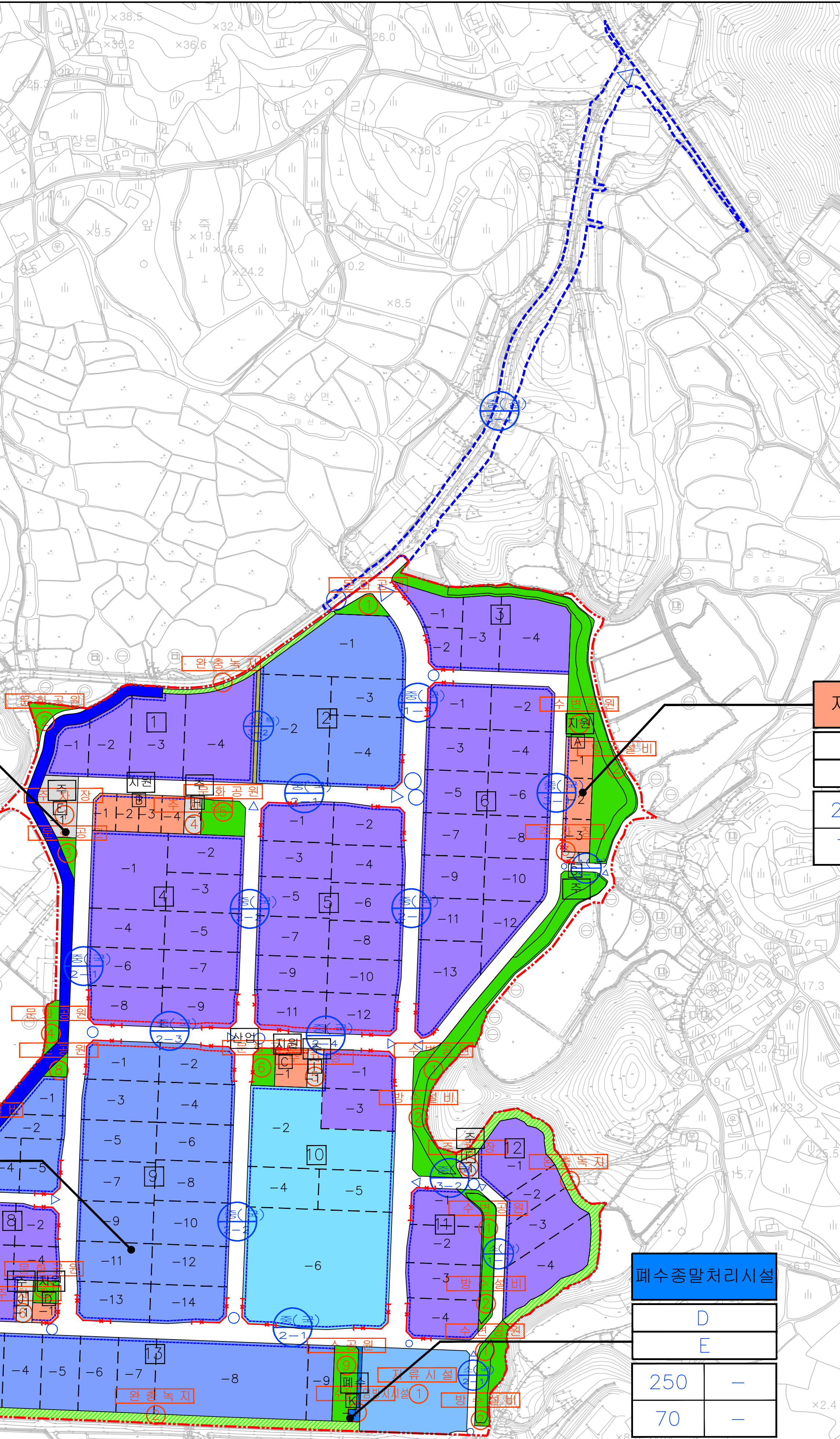
지원시설용지		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㎡)
A	-1	1,331
	-2	1,330
	-3	1,072
	소계	3,733
B	-1	999
	-2	1,000
	-3	999
	-4	997
	소계	3,995
C	-1	1,461
	-2	574
	-3	574
	-4	574
	소계	574
D	-1	574
	-2	574
	-3	574
	-4	574
	소계	574
합계		
9,763		

주차장용지		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㎡)
E	-1	2,385
	-2	488
	-3	325
	-4	733
	소계	700
F	-1	720
	-2	720
	-3	720
	-4	720
	소계	720
G	-1	720
	-2	720
	-3	720
	-4	720
	소계	720
H	-1	720
	-2	720
	-3	720
	-4	720
	소계	720
I	-1	720
	-2	720
	-3	720
	-4	720
	소계	720
J	-1	720
	-2	720
	-3	720
	-4	720
	소계	720
합계		
5,428		

수질오염방지시설		
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㎡)
K	-1	613
	-2	613
	-3	613
	-4	613
	소계	613
합계		
613		

주 차 장	
C	
E	
250	-
70	-

산업시설용지	
A	
E	
250	-
70	-



건축물에 관한 계획 표시방법	
용도제한	허용용도 불허용도
건축제한	용적률 (%) 건폐율 (%)
	최고높이 (층) 최저높이 (층)
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세부 분류표	
도면표시번호	건축물 용도
A	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의 공장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및 제26조의5 제3호의 지원시설 (종교집회장, 육외활동이 있는 코프연습장, 장의사, 안주점, 안마사술소, 안마원 제외)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
B	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(종교집회장, 육외 활동 및 점화시설 중 전시장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산업 단지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(일반업무 시설로서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 시설에 한정한다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중 주유소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(배차장 제외)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
C	- 「주차장법」 및 「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부대시설
D	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시행령 제79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 시설
E	- 「하수도법」 제2조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
지원시설용지	
B	
E	
250	-
70	-

폐수종말처리시설	
D	
E	
250	-
70	-

유치업종배치계획도

◎ 범례

- 산업단지 구역계
- 준용사업 구역계(진입도로)
- 획지분할가능선
- 산업시설용지
- 지원시설용지
- 공원
- 녹지
- 배수시설
- 도로
- 주차장
- 저류지
- 수질오염방지시설
- 보행자전용도로
- 소재산업
 - C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 -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- 부품산업-①
 - C24 1차금속 제조업
 -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 - C28 전기장비 제조업
 -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- C32 가구 제조업
- 부품산업-②
 -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
 - C28 전기장비 제조업
 -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- C32 가구 제조업

산업 A 가 구 번 호

① 획 지 번 호

건축한계선(5m)

건축한계선(3m)

차량진출입불허구간

S = 1 : 3,000

